

의안번호	제 276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276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월 일  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1. 제안사유

-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
-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는 경제통상국 내에 설치함(안 제2조)
-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,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구성함(안 제3조)
-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, 제6조)
  -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위원회는 30명 이하로 구성함.
  -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함

### 3. 의안전문 : 붙 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-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및 제6조
-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

제2조(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(이하 “일반산업단지 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경제통상국 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, 구성원은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교통,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, 지방환경관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자문단)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

제5조(설치)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
2.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, 설계전문가, 환경전문가 각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4.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5.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충청북도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7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8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

회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
제7조(임기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

②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0조(제척 · 회피) ① 위원이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,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때
2.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
제12조(의견의 청취 등) 위원회는 부의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단 등은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수당 등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자문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관련법령 발췌

## □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”란 입지타당성 검토,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.
2. 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”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·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,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, 시·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.

3. “산업단지계획”이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 계획,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,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.
4. “민간기업등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**제5조(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)**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(이하 “국가산업단지”라 한다)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에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(이하 “일반산업단지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시·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교통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, 시·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, 지방환경관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,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·도지사(이하 “국토해양부장관등”이라 한다)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환경 분야 등 산업 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, 농지·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
2.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·조정 지원
3.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
5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또는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평가항목·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)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6.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
7.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⑦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·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⑧ 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)**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·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
1.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2.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정권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,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,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1.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
  2.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 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·도에 설치된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, 설계전문가,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4.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5.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7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8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-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,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

성한다.

-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산업단지 인 ·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

**제4조(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: 1인
2. 법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: 5인
3. 법 제6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: 3인
4. 법 제6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: 3인
5. 법 제6조제2항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: 각 호별로 각각 2인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